

문서번호	서울장학재단-345
보존기간	영구
결재일자	2016.6.17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제 호

담 당	부 장	사무국장	이사장
김동규	최준근	대결 최준근	문미란
협조자			

I·SEOUL·U




---

## 서울장학재단 회의수당 지급내규 개정

---

2016. 6.

서 울 장 학 재 단

# 서울장학재단 회의수당 지급내규 개정

## I 목적

당연직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제고를 통한 市재-재단 간 소통·협력 증대 및 재단 비상임이사(당연직이사 포함)의 이사회 참석수당 현실화를 통해 서울장학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II 관련근거

- ◆ 지방 출자·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(행자부)
- ◆ 공기업담당관-4855(출자·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 알림)
  - 당연직이사의 운영제도 정비(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금지 규정 정비, 300천원/회)
- ◆ 서울장학재단-271(이사회 운영 개선 계획)
  - 당연직이사 운영 관련 이사회 참석수당 내규 개정(250천원 → 300천원)

## III 추진사항

-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개정
- 주요 내용
  - 지방 출자·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(행자부)
    - 해당 기관에 출자·출연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

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무보수 비상근 임원 여부에 관계없이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. 다만, 이사회 참석하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
- 서울장학재단-271(이사회 운영 개선 계획)
  - 이사회 회의 참석수당 증액(250천원 → 300천원)
  - ※'16년 하반기는 재단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

■ 당초 「2016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」('15.9월, 서울시)에서 비상임 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을 250천원으로 규정하였으나,  
 ■ ①투자기관 이사회 참석수당(500천원) 및 ②별도의 직무수당 없이 지난 '13년 이후 참석수당이 250천원으로 동결된 점을 고려하여 참석수당을 **300천원으로 증액 조정**  
 (☞ 외부 비상임이사 등에도 동일기준 적용)

□ 신 · 구 대비표

신				구			
제4조(지급액) ①회의참석수당 및 이사장 직무수당 지급기준액은 별표1과 같다.				제4조(지급액) ①회의참석수당 및 이사장 직무수당 지급기준액은 별표1과 같다.			
구분	등급	지급액 (원)	지급기준	구분	등급	지급액 (원)	지급기준
이사회 참석수 당	이사 장	250,000	당해 회의 참석자	이사회 참석수 당	이사 장	<b>300,000</b>	당해 회의 참석자 ( <u>당연직 임원 포함</u> )
	이사 · 감사	250,000			이사 · 감사	<b>300,000</b>	

## **IV 기타사항**

---

□ 개정절차 : 이사장 결재 후 내규 시행( '16.6.17 시행)

붙임 1. 서울장학재단 회의수당 지급내규 1부.

2. 서울장학재단 이사회 운영 개선 계획 1부 . 끝.